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3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이학영・임호선・윤건영

박홍근 · 김현정 · 박정현

한정애 · 정준호 · 진선미

전재수 • 한민수 • 문금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위반 정도가심각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9호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격 제한) ①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	
·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	
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	
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
	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
	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u>9.</u> (생 략) ② ~ ⑦ (생 략)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② ~ ⑦ (현행과 같음)